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23년 3월 6일 규칙 제932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일반자문"이란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이라 한다) 전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별 토론회에서 분야별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형태를 말한다.
- 2. "책임자문"이란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자문을 요청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문의뢰서 를 작성하여 신청하고, 자문위원 중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형태를 말한다.
- 제3조(정책자문 요청 및 자문의견 제출 등) ① 시장은 「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2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 과 각종 현안사항을 시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에 자문위원에게 일반자문과 책임자 문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자문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자문의뢰서와 함께 자문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자문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,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부서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.
 - ③ 위원장은 책임자문 의뢰사항을 검토 후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며, 책임자문으로 선정된 위원은 그 자문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.
- 제4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 원회를 둘 수 있다.
 - ②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하나의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며,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부서장

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

- 의 요청이 있을 경우,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.
- ④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는 전체 위원회에 보고한다.
- 제5조(협조요청) 위원회는 조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,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6조(자문료 등) ① 책임자문 위원은 조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료 등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료 등의 집행기준은 별표와 같으며,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.
- 제7조(보안 유지 등)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보안 및 청렴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8조(운영세칙 등)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정책자문료 등 집행기준

구 분	한도액	지급기준	비고
일반자문	50,000원	1회	서면회의 개최 시 (출석회의의 경우 심사수당으로 갈음)
책임자문	300,000원	최초 1시간 10만원 (초과 매시간 10만원)	

주) 「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」에 준함

[별지 제1호서식]

정 책 자 문 의 뢰 서					
제 목					
자문 의뢰 내용	※ 별지 사용 가능				
첨부자료					
「오산시 정 항에 따라 자문	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을 의뢰합니다.	운영조례	시행규칙」	제3조제2	
	20 .				
	(직위)	과장	(성명)	(인)	
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					

[별지 제2호서식]

		정 책 자 문 회 신 서				
제	목					
의	견	※ 별지 사용 가능				
「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」 제3조제3 항에 따라 자문결과를 제출합니다.						
		20				
		자문위원 (인)				
5	오산시장 귀하					

[별지 제3호서식]

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자문료 청구서

과 제 명					
자문의뢰일	20		제출완료일		20
요 청 부 서					
자 문 위 원	소속			성 명	
기보기현	직 위				
청 구 금 액		그	원(₩)
계 좌 번 호				예 금 주	
자 문 결 과	별첨				

※ 붙임: 자문결과 요약서 1부.

「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」제6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자문료를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. . .

자문위원 (인)

오산시장 귀하

[별지 제4호서식]

정책자문관리대장

일련 번호	의뢰일 (실과요구)	요청부서	건	명	의뢰분과 (위원명)	관련서류 및 참고자료	자문의뢰 결과 (완료일, 예산액)	비고

[별지 제5호서식]

서 약 서

나는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.

- 하나, 나는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라도 자문과 관련하여 지득한 일체의 정보를 누설치 아니하겠습니다.
- 하나, 나는 공정한 직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청탁·알선을 근절하고 내부정보·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.
- 하나, 나는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- 하나, 나는 직무수행 시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부정한 사익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.
- 하나, 나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합니다.

20 . . .

자문위원 (인)

오산시장 귀하